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93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20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61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313호(號)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
남만주철도주식회사소관철도(南滿州鐵道株式會社所管鐵道) 화물연락
길장철로관리국소관철도(吉長鐵路管理局所管鐵道)

운송규칙(貨物連絡運送規則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20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3조(條) 중(中) 「함경중부선(咸鏡中部線)」을 삭제(削除)함.

제6조(條)제7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7 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협궤선(狹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 길이[長] 8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, 동(同)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(箇) 길이[長] 30척, 중량(重量) 5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4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

조선국유철도(朝鮮國有鐵道) 광궤선(廣軌線) 발(發) 또는 착(著)의 소화물급(小貨物扱)에 있어서는 1개(箇) 길이[長] 18척(尺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3백(百) 입방척(立方尺)을, 동(同) 차급(車扱)에 있어서는 1(箇) 길이[長] 33척, 중량(重量) 20톤(噸·ton) 또는 용적(容積) 칠팔백(千八百)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